

공 고**<일반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609호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9-276호(2009.03.20)로 조합설립인가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3-9호(2013.01.1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26호(2016.09.1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장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효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 장위뉴타운 10층 1002호(석관동 349-1)
(☎ 909-3695)

3.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장위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87,151.7㎡

라.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29층 19개동 1,7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임대아파트 295세대포함)

4. 변경내용

가. 단위세대 면적조정(설계변경)

- 벽 배수설비(배관) 변경에 따른 화장실 설비공간 확보
전용면적이 줄고 벽체면적이 늘어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음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단위 : m²)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명칭	전용	공유	공급면적	명칭	전용	공유	공급면적	
임대	39형	39.23	21.89	61.12	39형	39.00	22.11	61.11	-0.01
	40형	40.70	22.71	63.41	40형	40.47	22.94	63.41	
	51형	51.57	28.06	79.63	51형	51.34	28.32	79.66	+0.03
분양	59A형	59.60	25.28	84.88	59A형	59.10	25.77	84.87	-0.01
	59B형	59.78	25.47	85.25	59B형	59.49	25.81	85.30	+0.05
	76형	76.57	25.46	102.03	76형	76.15	25.88	102.03	
	84A형	84.90	27.85	112.75	84A형	84.48	28.27	112.75	
	84B형	84.90	28.74	113.64	84B형	84.47	29.17	113.64	
	112형	112.11	28.01	140.12	111형	111.83	28.29	140.12	

나.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 변경내용

(단위 : 천원)

항목		변 경 전	변경후	증 액	비 고
소용비용추산액	계	529,990,693	537,386,747	증 7,396,054	증 1.39%
	손실보상비	90,832,000	98,228,053		
	기타경비	77,275,851	84,671,905		
자금조달계획	계	529,990,693	537,386,747	증 7,396,054	
	기타자금	299,990,693	307,386,747		

5. 공람기간 : 2018. 5. 17. ~ 2018. 5. 31. (14일간)

6. 공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2241-2833)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 909-3695)

7.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경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